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정	1986.11.25.
1차 개정	1987. 3. 5.
2차 개정	1988. 2. 1.
3차 개정	1993. 7.14.
4차 개정	1996. 9. 1.
5차 개정	2003. 5.12.
6차 개정	2004.10.11.
7차 개정	2009.12.01.
8차 개정	2010. 9.29.
9차 개정	2012.07.25.
10차 개정	2014.08.25.
11차 개정	2017.03.28.
12차 개정	2018.02.27.
13차 개정	2018.04.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전임교원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제3조(임용 동의) 총장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적용)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전임교수의 자격과 제한

제5조(임용 및 지원 자격) 우리 대학의 임용 및 지원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
2.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적합한 교원의 자질 및 품성을 갖춘 자
3. 예술분야를 제외하고는 박사학위 소지자
4. 모집전공 분야와 최종학위의 전공이 일치하는 자

제6조(임용의 제한) ①교원 신규 임용 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과(심화과정)별로 신규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2절 교원 신규임용 방법과 절차

제7조(신규임용방법) ①교원의 신규 임용은 재외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임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임용에 의한다.

②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총장 또는 해당 학과의 요청이 있을 때 총장은 교육과정에 따른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모집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한다.

③교원의 신규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전공 분야의 영역을 특별히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교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모집분야·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지·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⑤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의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실기능력 포함)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⑥총장은 교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 세칙을 학과장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교원공개임용관리위원회) ①교원 공개임용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원공개임용관리 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관리위원회는 교무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모집분야와 관련이 없는 4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 2인은 학과장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원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원임용이 완료된 때로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모집분야 및 인원의 적합성 검토
2. 학과 심사기준의 적합성 검토
3. 지원서류 심사
4. 전공 및 외국어 시험을 부과하는 학과의 시험관리
5. 기타 각종 평가기준, 평가방법의 적합성 및 관리 등

⑤관리위원회는 제4항 각호에 대한 검토 결과 또는 임용과정에서의 각종 평가의 결과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정 및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과장 및 학과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학과심사위원회) ①교원 모집분야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심사 등을 위하여 학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학과심사위원회는 채용분야의 해당 학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1 이상은 본교 소속 교수가 아닌 자로 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 ③학과심사위원 중 본교 소속 교원은 모집분야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 교수회를 거쳐 선발된 교수를 임명한다.
- ④본교 소속 교원이 아닌 위원은 타 대학 교원 중에서 공정하게 총장이 위촉한다. 단, 본교 소속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이 될 때까지 학내·외에서 모집분야와 동일한 전공자 또는 유사전공자 중 해당 학과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학과심사위원으로 본교 소속 교원 및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임용분야별 지원자의 최종학위논문지도교수, 제출된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 또는 공동집필 교수는 제외한다. 단, 초·중등 교과서는 예외로 한다.
- ⑥총장은 모집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임용 공고를 하여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임용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는 학과심사위원의 임명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⑦학과심사위원회는 제7조 제5항의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사항 중 모집분야와 전공일치도 심사, 연구실적물 심사 등 전공분야의 심사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10조(공개강의심사위원회) ①교원 모집분야 지원자의 공개강의 심사를 위하여 모집학과 소속 교원 및 외부 심사위원으로 공개강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학과장으로 한다.

②공개강의심사위원회는 학과심사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한다.

제11조(면접심사위원회) ①교원 모집분야 지원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총장, 교육전문대학원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및 해당 학과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②면접심사위원의 자격사항은 제9조의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총장은 제외한다.

제3절 계약제 임용

제12조(계약제 임용) ①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별지 1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10년

다. 조교수 : 4년

2. 급여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에 준한다.

3. 근무조건 : 소속은 모집학과로 하고, 담당시간은 본교 강사료지급규정의 책임시간 이상으로 하며, 기타 담당과목 및 연구실 등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업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3조(신규임용직급) ①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위취득 기간을 제외한 교육 및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박사학위 취득자는 부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사학위취득자로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대학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자 직명에서 승진소요연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 전의 직명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제14조(초빙교수 등) 총장은 학교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전임교원 외에 초빙교수 또는 겸임교수를 둘 수 있다. 초빙교수 또는 겸임교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원의 승진임용 등

제1절 임용기간

제15조(임용기간) ①교수의 임용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

②부교수의 임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조교수의 임용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2절 재임용과 승진임용

제16조(재임용) ①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총장은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의 신청에 따라 재임용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총장은 재임용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연구 등의 업적을 평가한 후 근무기간 종료 2월전까지 재임용할 것 인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한다.

④제3항의 업적평가 기준과 방법·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재임용과 재계약은 3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로 한다.

제17조(승진임용) ①승진임용대상자는 당해 직급에서 승진소요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으로 한다.

②승진임용대상자는 교육, 연구실적, 학생지도 능력, 근무상황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승진 임용한다.

③승진임용에 소요되는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 → 교수 : 5년
2. 조교수 → 부교수 : 4년으로 하되, 단, 석사학위 소지자는 6년

④승진임용은 4월 1일과 10월 1일에 한다.

제3절 정년보장교원 임용

제18조(정년보장교원의 임용) ①정년까지 임용할 교수 및 부교수는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이하 “정년보장위원회”라 한다)에서 정년보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정년보장위원회는 정년보장대상교원에 대하여 총장이 작성 제출하는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정년보장여부를 심사한다.

③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수는 교원 배정정원의 80%이하로 한다.

제19조(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 정년보장대상교원의 정년보장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이하 “정년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정년보장위원회는 교무과장, 학생과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 중 다음사항을 참작하여 정년보장여부를 결정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술활동
2.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4. 기타 임용관련 서류 및 총장 의견

②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4절 연구실적 심사

제24조(연구실적심사) ①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의 범위 및 인정률은 본교 “연구실적심사규정”에 의한다. 다만, 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2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적물의 심사는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실적심사평정은 각 편이 평균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④계재된 학술지가 공인된 국제학술지(SCI, A&HCI, SSCI급)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A, B등급 학술지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제25조(연구실적 인정기간 및 편수) ①승진임용 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기간 이내,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되기 위해서는 현 임용기간 이내에 3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진임용과 재임용,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동일 연구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인사위원회

제26조(인사위원회) 교원의 임용 동의 및 기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는 교무과장, 학생과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은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임교수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규정,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규정 및 서울교육대학교 교원승진임용 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공포일(2004년 10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12.01.)

부 칙(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9.29.)

부 칙(5)

이 규정은 2012. 7.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 03. 28.)

부 칙(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 02. 27.)

부 칙(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 04. 24.)

전임교원임용계약서(안)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서울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의거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갑”이라 하고, 임용예정자를 “을”이라 하여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자)

1. 갑 : 서울교육대학교총장 0 0 0
2. 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 (임용직위)

제3조 (계약기간)

- 제4조 (급여)** ① ‘갑’은 ‘을’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다.
- ② ‘갑’은 ‘을’에게 기성회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및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조건) ‘을’의 계약기간 중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소속학과 : 학과
2. 담당과목 : (대학에서 지정하는 과목 및 관련과목)
3. 담당시간 : 주당 9시간 이상
4. 연구실 : 서울교육대학교 00관 00실

- 제6조(업적 및 성과)** ① ‘을’은 계약기간 중에 근무조건을 수행함은 물론 서울교육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부여하는 대학 발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이 부여하는 대학 내의 각종 봉사활동과 보직 활동 및 학생지도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 ‘을’은 계약기간 만료 4월 전까지 ‘갑’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과 재계약을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갑’은 ‘을’에게 재계약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을’은 재계약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계약 여부 통지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갑’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재계약 불가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을’과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을’도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기타) ① “을”은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인)

【을】 임용예정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